

■ 비정규군 공로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6·25 참전유공자 인정 가능 ※접수처 : 지방보훈청(지청)
 - 비정규군 공로자는 국가 보훈제도에 따라 국가보훈부 6·25 참전유공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훈 혜택이 있습니다.
 - ▲생존시 참전명예수당(국가보훈부) 및 참전수당(지자체) 지급
 -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보훈요양원 이용비 감면 등
 - ▲국립호국원 안장(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 비정규군 공로자가 고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족이 국가보훈부에 6·25 참전유공자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고인의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 교통안내

버 스	• 삼각지역 하차 : 100, 150, 151, 152, 500, 501, 502, 504, 506, 507, 605 • 전쟁기념관 하차 : 740
지하철	• 삼각지역 하차 : 4호선, 6호선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헌신과 희생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

신청기간 '25. 4. 1.~'26. 3. 31.

당신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 6·25 비정규군 공로자란?

6·25 전쟁 전·후인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계급도 군번도 없이 국가수호의 일념만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미군8240부대 유격대 등에 소속 되어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첩보수집 또는 유격전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으로 「6·25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라 그 공로자로 인정받은 사람

■ 「6·25 비정규군 보상법」(제정 '21. 4. 13.)

○ 제정 배경

- 6·25전쟁 전·후 美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외국군 소속 또는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비정규군의 공로를 특별히 인정하고 보상하고자 법률 제정

○ 보상 대상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에서 미군 8240 부대 등에 소속된 비정규군으로 유격 또는 첩보 수집 임무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 또는 그 유족 *유족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비정규군 보상 대상 주요부대

KLO	6·25 전쟁 전후 미국극동사령부 소속으로 적 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첩보수집 및 공작 활동을 실시한 첩보부대
미군 8240부대 유격대	6·25 전쟁 중 적 후방지역에 침투하여 첩보수집 및 유격 작전 부대로 동키부대, 울팩부대, 스캐는 부대 등
미국중앙정보국 첩보부대	6·25 전쟁기간 미국 CIA소속의 첩보 및 유격작전부대로 영도유격대, JACK 부대
제6004부대	6·25 전쟁기간 미국극동공군 소속으로 적 후방지역에 침투하여 조종사 구출 및 첩보수집 활동을 실시한 첩보부대

■ 보상금(공로금) : 공로자 1인당 1천만 원

*유족은 신청자에 한하여, 「민법」 상 상속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

■ 신청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유족 : 배우자, 자녀,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

■ 신청기간 : '25. 4. 1. ~ '26. 3. 31. (1년간)

*최초 신청기간('21.10.14.~'23.10.16.)내에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공로자 및 유족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신청기간을 위와 같이 연장하였음.

■ 신청방법

○ 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우편번호 04383)
- 방문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6·25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평일 09:00 ~ 17:00, ☎ 02)6424-5505)

○ 구비서류

- (인터넷)비정규군보상심의위원회(new.mnd.go.kr/user/ncdc) 다운로드

구 분	구 비 서 류
본 인 (공동)	• 공로금 지급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비정규군 활동서(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 제대증, 전역증, 신분증 등(USB 제출은 지양) - 활동내용을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유 족	• 공통 구비서류 및 유족구비서류 • 유족 1명을 대표로 선정 시 -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 공로자와 전체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유족이 개별 신청 시 - 다수 신청인 서명서(시행령 [별지 제5호 서식]) - 공로자와 전체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 - 개별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구 분	구 비 서 류
대리인	• 공로금(신청, 수령) 위임장(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본인의 위임을 받는 경우 공통 구비서류, 유족의 위임을 받는 경우 공통 구비서류 + 유족 구비서류 함께 제출
신청인이 재외동포인 경우	• 여권 또는 비자 사본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영주권자)/시민권 사본, 서명인증서(시민권자) *국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날인된 도장 또는 서명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의 것과 같아야 합니다.
- 유족대표 선정 시 향후 공로금 지급에 관한 모든 절차는 유족대표를 통하여 진행됩니다(공로금도 유족대표의 계좌로 지급)
- 대리인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로금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정할 수 있으며 공로금 위임장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인을 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이민 등 국외체류 시 : 해외공관의 장
• 입원 시 : 해당 의료기관의 장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 해당 수용기관의 장
• 그 밖의 경우 : 읍·면·동장

○ 신청 서식 및 서류 배부

-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비정규군보상심의위원회 배너 선택)
*비정규군보상심의위원회(new.mnd.go.kr/user/ncdc)
*공로금 신청 서류안내에서 다운로드
- [방문 출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력

■ 전화문의 : 국방부 6·25보상지원단 02)6424-5502 ~ 5505

